

행동분석전문가 자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행동분석학회에서 시행하는 행동분석전문가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동분석전문가’라 함은 한국행동분석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임상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자격의 명칭과 등급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규정은 한국행동분석학회에서 시행하는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의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의 등급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제4조(자격) 행동분석전문가는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응시자격) 행동분석전문가 응시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① 1유형 검정 응시자격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며 본 학회가 제시한 행동분석 필수교과목(제16조)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¹⁾
 2. 수련감독자의 슈퍼비전이 최소 5% 이상(75시간 이상) 포함된 1,500시간의 임상실습을 한 자²⁾
- ② 2유형 검정 응시자격
 1. 국내외 행동분석학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4년제 대학에서 응용행동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지원 강좌를 5년 이상 강의한 경력과 국내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행동 분석 혹은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al Support) 관련 논문을 300% 이상 게재한 자로 본 학회 자격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³⁾이거나 본 학회 그랜드파더(Grandfather)로 위촉된 자⁴⁾

1) 석사학위 증명서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응용행동분석 자격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유사과목을 필수과목(영역)으로 인정
2) 슈퍼비전 양식, 임상실습 증명서, 실습일지
3) 재직 증명서, 논문사본 또는 그랜드파더 위촉장
4) 그랜드파더(Grandfather)란 한국행동분석학회 창립 멤버로 응용행동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문 발전의 초석을 세운 원로 행동분석전문가에게 향존적으로 수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6조(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슈퍼바이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련감독자 역할을 획득한다.

- ① BCBA 슈퍼비전 자격 소지자
- ② 본 학회에서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행동분석 및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대학교수
- ③ 본 학회 그랜드파더

제3장 행동분석전문가 역할

제7조(직무내용) 행동분석전문가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병원, 복지기관, 교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행동, 사회-언어, 적응 기술 발달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감독과 부모 교육
- ②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및 문제행동 기능평가
- ③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가 훈련 및 감독
- ④ 응용행동분석의 최신 동향 및 재교육을 위해 관련 학술 활동 참석

제4장 자격검정운영위원회

제8조(자격검정운영위원회) 자격검정운영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행동분석전문가의 자격검정을 관리·운영한다.

제9조(위원장) 학회장이 자격검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자격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응용행동분석 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 ② 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을 보충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업무분장) ① 본 학회는 자격검정 업무를 위해 자격검정관리 위원장, 자격검정기획, 출제·채점, 자격검정관리 등의 담당자를 둘 수 있다.

- ② 자격검정관리 위원장은 자격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 ③ 자격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업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검정 출제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면접시험 문제의 출제관리,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⑤ 자격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 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자격검정시험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 취득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자격 검정

제13조(검정기준)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문제행동의 기능 평가, 기능 기반 중재안의 개발,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계획, 중재, 실행 업무 등 행동분석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
- ② 행동 중재의 효율성 평가, 관련 인력 훈련 및 감독과 부모 교육 등 행동분석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

제14조(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의 검정방법, 검정시험 형태, 합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검정방법	검정 시험 형태	합격 기준
1유형 시험 검정	필기	120분, 총 80문제, 100점	자격시험에 70점 이상인 자
	면접	10문제, 100점	자격시험에 80점 이상인 자
2유형 시험 검정	필기	<행동분석가 윤리, 응용행동분석 I, II> 과목 필수 응시	자격시험에 70점 이상인 자
	면접	10문제, 100점	자격시험에 80점 이상인 자

제15조(응시자 본인 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검정과목) 행동분석전문가의 검정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	주요 내용
필기시험	행동분석가 윤리	1. 응용행동분석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행동분석가로서 윤리의식에 관한 개념과 이해 2. 문제행동평가와 중재, 교육적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연구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행동분석전문가의 사회적 역할과 준수 사항 4. 피감독자 및 수련감독자의 의무와 권리
	응용행동분석 I,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적 배경 2. 행동분석의 특성과 분야 3. 기본 개념 4. 행동 원칙 5. 행동의 형성, 유지, 감소, 증가 등의 기본적인 행동적 절차
	행동측정과 행동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행동의 파악과 정의 2. 행동측정과 기록, 특정행동에 관한 자료 수집, 해석, 이용 3. 개별화된 행동진단 절차 설계 및 실행 4. 행동변화 요소 및 특정 행동변화 절차 5. 행동변화 시스템(예: 토큰경제, 개별화된 교수체계 등)
	행동기능 평가 및 긍정적 행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행동 파악 및 정의 2. 문제행동의 환경적 요인 및 기능분석 3. 기능 기반 중재 절차 4. 긍정적 행동지원 5. 행동적 지원 절차 평가 및 관련 직원 감독·훈련
	단일대상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설계의 이해 및 적용 2. 실험설계의 적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변화 절차와의 연관성 이해 및 적용 3.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와 현장 적용
면접시험	행동분석가 윤리	<p>면접시험의 주요 내용은 필기시험의 주요 내용과 동일</p>
	응용행동분석 I, II	
	행동측정과 행동변화	
	행동기능 평가 및 긍정적 행동지원	
	단일대상 연구 방법	

제17조(자격검정 일부 면제)

- ① 제4조(응시자격) 2유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면접시험은 필수이나 필기시험은 최대 3 과목까지 면제한다.

제18조(임상실습) 행동분석전문가 응시자격의 임상실습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상실습이라 함은 피감독자가 처한 전문적 환경에서 행동적 교육이나 행동적 중재가 필요한 개인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행동분석 절차를 실행하는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적 환경이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개인 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분석적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임상 활동에는 행동적 절차를 계획, 실행, 훈련, 감독, 평가는 물론 관련된 주제에 관한 발표 및 교육활동, 문헌 검토 및 영상관람, 관련 학술대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주별로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0시간 이내의 임상 활동이 월별로 3주 이상 이루어졌을 때 임상실습시간으로 인정된다. 피감독자는 실습기간 동안 주별 실습일지를 본 학회가 제시하는 양식(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으로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임상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②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임상실습이라 함은 최소 2주일에 1회는 일정 시간 동안 수련감독자로부터 피감독자의 전문적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도나 피드백을 받으며, 동시에 수련감독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주 단위 슈퍼비전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슈퍼비전은 일대일 혹은 10명 이내의 소집단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대일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에는 Behavior Analyst Certification Board(BACB)에서 명시한 슈퍼비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지도 감독이나 피드백 제공은 직접 혹은 영상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③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은 총 임상활동 시간의 최소 5%의 슈퍼비전 시간에 할애되어야 하며, 임상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2주에 1회는 슈퍼비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슈퍼비전이 포함된 임상실습 단위는 2주이며, 단위별로 슈퍼비전이 포함되지 않은 임상실습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본 학회의 자격증 소지자, BCBA, 혹은 BCBA-D에 의해 진행되는 대학의 행동분석 프로그램의 실습과목 수강시간도 슈퍼비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2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기간 동안 일대일 슈퍼비전이 면제된다.
- ⑤ 임상과정은 석사과정 수준에서 본 학회 혹은 BACB가 인정한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다.
- ⑥ 수련감독자는 슈퍼비전이 포함되는 임상실습기간, 임상실습시간 수, 슈퍼비전 시간, 피감독자의 수행평가가 포함된 본 학회가 제시하는 슈퍼비전 양식(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피감독자가, 사본은 수련감독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각 자격증 급별로 요구되는 임상시간과 슈퍼비전 시간을 완수하면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가 제시하는 양식(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에 따라 서명한 임상실습증명서를 피감독자에게 발급한다. 임상기간 중 2인 이상의 수련감독자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은 경우, 각 수련감독자별로 계약서와 증명서를 발급·보관한다.
- ⑦ 피감독자는 임상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본 학회와 연락을 해서 수련감독자의 자격 여부를 사전 승인받도록 한다.
- ⑧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서류는 임상감독자의 서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제19조(자격취득 및 갱신 비용 등) 자격취득 및 갱신 비용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 갱신 비용	자격증 분실 재발급
25만원	10만원	3만원

- ① 1차 서류전형 불합격자 및 2차 필기고사 결시생 환불 가능
- ② 자격시험 신청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이나 2차 필기고사 전까지 취소 시 환불 가능

제20조(자격증의 갱신 및 보수교육) 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증 갱신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증 갱신을 위해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둔다. 자격증 갱신 유효기간이란 3년간 3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간 갱신 유예를 의미한다. 자격증 갱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해야 하며, 학회는 자격증 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

- ① 자격증은 3년(이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 ③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3년간 36시간(50분 단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행동분석 전문가 자격시험에 재합격
 - 2. 회원 연회비의 납부
- ④ 보수교육은 한국행동분석학회 주최, 공동 주최, 후원하는 연수로 본 학회와 연수 기관 간 협의 하에 이루어진 교육을 말한다.
- ⑤ 보수교육 강의 개시 후, 불참 시 환불 가능

제21조(실시회수 및 시기, 공지)

- ① 자격증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 일시와 세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한국행동분석학회의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본 학회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자격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 조치)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 적용 시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